

의안번호	2219536
의 퇴 인	여기구 의원
회 답 일	2026. 7. 15.
추 계 번호	26F308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철강분야 추가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고 연구·인력개발 및 통합투자 세액 공제 중 일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 등은 2028년 13.1억원, 2031년 1조 3,947억원 등 부터 2028년부터 2031년까지 4년간 총 1조 3,988.5억원(연평균 3,497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8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철강 분야 추가 (안 제10조제1항)	-13.1	-13.8	-14.6	-15.4	-56.9	-14.2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에 대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0조제1항)	-	-	-	-13,386.5	-13,386.5	-13,386.5
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 기본공제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4조제1항)	-	-	-	-545.2	-545.2	-545.2
합 계	-13.1	-13.8	-14.6	-13,947.0	-13,988.5	-3,497.1

주: 1.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2. 단수조정으로 인해 연도별 금액의 합계와 누적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연도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도 제시된 평균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철강 분야 추가 -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8개 분야에서 철강을 포함한 9개로 확대 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의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- (현행) 2029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 ※ 반도체 분야 기본공제 적용기한(2031.12.31.)은 현행 유지	
2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제외) 사업화·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- (현행) 2029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 ※ 반도체 분야 기본공제 적용기한(2029.12.31.)은 현행 유지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2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6년 중 통과되어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발생
 - 2027년 귀속소득 및 투자액 등은 2028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
 -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될 경우,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31년(2030년 귀속분)까지 발생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동 및 적용기한 연장 등에 따른 기업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음
 -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가 추가되거나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연장될 경우, 기업의 R&D 지출 및 투자의 대상·규모·시기 등이 변화할 수 있으나, 추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①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철강 분야 추가, ②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, ③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·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
 - 세수효과는 ①과 ②를 동시에 고려한 안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③을 고려한 안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추계함
 - 철강협회 제공자료에 따르면,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일반기술에 국한되어 발생하므로

①과 ③의 세수효과는 상호작용이 없으며, 제도의 특성상 ②와 ③의 세수효과는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적음

가. 국가전략기술 철강 분야 추가 및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0조 제1항)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- 개정안에 따라 현행 철강분야의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(이하 'R&D')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사업화·연구개발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공제율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가정
 - R&D 세액공제 공제율(%): (현행) 중소·중견기업 20, 대기업 30
→ (개정안) 중소·중견기업 30, 대기업 40
 - 통합투자 세액공제율(%): (현행) 중소기업 12, 중견기업 6, 대기업 3
→ (개정안) 중소기업 25, 중견·대기업 15
 - 개정안에 따른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우선 적용하고, 여기에 철강분야 공제율 인상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계
- 철강협회의 기술유형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2023~2025년 귀속분)을 활용하며, 국가전략기술에 철강분야를 추가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액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가정
 - 해당 기간 철강산업의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는 연평균 24억원 수준이며,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전액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임
-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공제액 비중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심의금액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023~2025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로 심의를 통과한 연구개발 금액의 비중이 R&D 세액공제에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가정
- 향후 철강분야의 R&D 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률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」, 2026.3.

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: 2025~2029」, 2025.9.
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공제세액의 20%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반영하여 추계함

나.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·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24조 제1항)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~2024년 기술·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5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 - － 단, 2025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·기업규모별 비중은 2023~2024년의 합산실적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
-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공제액 비중은 연구개발세액 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심의금액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－ 2025년 2월 세법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와 그 외 분야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
 - －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023~2025년간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분야별로 심의를 통과한 시설투자 금액의 비중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가정
 - ※ 2022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우대공제가 시행
- 향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²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 - －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에 더해 직전 3년간 평균값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(초과액의 10%)는 고려하지 않음
-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공제세액의 20%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하여 추계함

3. 상세 추계내역

2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」, 2026.3.

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: 2025~2029」, 2025.9.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 개요) 현행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규모별·기술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

- 현행 기업이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지출한 R&D 비용 및 시설투자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R&D 비용이나 투자액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¹⁾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	
				반도체 외	반도체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~40	40~50	
	중견기업 ²⁾	8~20	20~35	30~45	
	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	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	30
	중견기업 ²⁾	5~7.5	6~9	15~20	20~25
	대기업	1	3	15	20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현행 8개 분야에서 철강을 포함한 9개 분야로 확대하고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

-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2025년 2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인공지능 및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되어 8개 분야가 되었음

※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

→ (개정안) 상기 분야에 철강 분야 추가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9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
※ 반도체 분야 기본공제 적용기한(2031.12.31.)은 현행 유지

□ (철강부문 공제실적) 철강협회의 기술유형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(2023~2025년 귀속분)은 다음과 같음

- R&D 세액공제의 경우,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액이 대기업에 한정하여 발생

-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일반 시설투자에서 발생

[표 3] 철강기업의 R&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~2025년 귀속기준
(단위: 억원)

		R&D 세액공제				통합투자세액공제			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계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계
2023 귀속	국가전략기술	4.0			4.0				
	신성장원천기술	27.0			27.0				
	일반기술	42.9	0.1	1.2	44.2	976.8			976.8
	계	73.9	0.1	1.2	75.2	976.8			976.8
2024 귀속	국가전략기술	8.0			8.0				
	신성장원천기술	16.0			16.0				
	일반기술	23.2	0.1	1.1	24.4	1207.1		4.5	1211.6
	계	47.2	0.1	1.1	48.4	1207.1		4.5	1211.6
2025 귀속	국가전략기술	19.1			19.1				
	신성장원천기술	29.1			29.1				
	일반기술	11.4	0.1	1.2	12.7	429.0		1.7	430.7
	계	59.6	0.1	1.2	60.9	429.0		1.7	430.7

자료: 한국철강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R&D 공제실적) 2023년 및 2024년 R&D 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각각 4조 5,221억원, 2조 8,560억원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음

- 한편, R&D 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2023년 4조 6,302억원, 2024년 2조 9,575억원 수준

[표 4] 기술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및 2024년 신고 기준
(단위: 억원)

	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2023 신고	일반	14,852	2,886	6,023	23,760
	신성장·원천기술	266	255	8,971	9,492
	국가전략기술	32	9	11,927	11,968
	계	15,150	3,150	26,920	45,221
2024 신고	일반	13,150	950	5,614	19,714
	신성장·원천기술	195	562	5,407	6,164
	국가전략기술	54	99	2,529	2,682
	계	13,398	1,611	13,550	28,560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) 2023년 및 2024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법인

세 실적은 각각 1조 9,764억원, 1조 6,424억원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음

- 한편,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1조 7,693억원 수준

[표 5]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및 2024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2023 신고	일반	4,418	1,476	5,576	11,470
	신성장·원천기술	29	10	3	42
	국가전략기술	8	10	8,234	8,251
	계	4,455	1,496	13,813	19,764
2024 신고	일반	4,662	2,094	8,798	15,554
	신성장·원천기술	17	1	219	236
	국가전략기술	66	50	517	633
	계	4,746	2,144	9,534	16,424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가.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철강 분야 추가

□ (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 전망치) 2025년 잠정실적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구분한 후,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(2026.3월)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-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의 분야별 비중은 2023~2025년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R&D 비용의 분야별 비중과 같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－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는 기업의 개별 R&D 지출 및 시설투자가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며, 2022년 7월 기존 신성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심의까지 담당하도록 확장 개편
 - － 연간 4회 개최
- 2023~2025년간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R&D 비용은 총 1조 2,093억원으로, 이 중 반도체 분야의 비중은 57.9%, 수준

- 해당 기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별로 확정된 R&D 심의금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음

[표 6]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현황: 2023~2025년
(단위: 억원, %)

R&D	반도체	이차전지	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	바이오의약품	수소	전체
금액	7,000	3,347	964	472	116	12,093
(분야별 비중)	(57.9)	(27.7)	(8.0)	(3.9)	(1.0)	(100.0)

주: 확정금액 기준

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~2024년간 기술별 합산 공제실적의 비중을 2025년 잠정실적에 비례적으로 적용하면 국가전략기술의 공제규모는 8,046억원 수준이며, 여기에 다시 동기간 기업규모별 공제실적의 비중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공제액이 대기업에서 발생
- 기술별 비중(%): 일반 58.9, 신성장·원천기술 21.2, 국가전략기술 19.9
기업규모별 비중(%): (국가전략기술) 중소기업 0.6, 중견기업 0.7, 대기업 98.7

[표 7] 기술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추정치

(단위: 억원, %)

		2023년	2024년	합산 (비중)	2025 (합산비중×41,473억원)
기술별	일반	23,760	19,714	43,474 (58.9)	23,877
	신성장원천기술	9,492	6,164	15,656 (21.2)	8,599
	국가전략기술	11,968	2,682	14,650 (19.9)	8,046
		2023년	2024년	합산 (비중)	2025 (합산비중×8,046억원)
국가전략 기술 내 기업규모별	중소기업	32	54	86 (0.6)	47
	중견기업	9	99	109 (0.7)	60
	대기업	11,927	2,529	14,456 (98.7)	7,939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~2025년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심의현황의 R&D 심의금액을 반영하

- 여 반도체와 반도체 외 분야를 구분하면 그 세액공제액 비중은 다음과 같음
- 기술분야별 비중(%): 반도체: 57.9, 반도체 외 42.1

[표 8] 기술분야별 R&D 세액공제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	2025년 추정치	기술분야별 비중	
			반도체(57.9%)	반도체 외(42.1%)
국가전략 기술 내 기업규모별	중소기업	47	27	20
	중견기업	60	35	25
	대기업	7,939	4,596	3,344
	계	8,046	4,658	3,389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 - 단, 2030년 이후 투자증감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(5.4%)으로 증가한다고 가정

[표 9] 기술분야별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기술분야 및 기업규모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신성장·원천기술	9,680	10,240	10,811	11,391	12,003	
- 중소기업	285	302	318	335	353	
- 중견기업	505	534	564	594	626	
- 대기업	8,890	9,404	9,928	10,461	11,023	
국가전략기술(반도체)	5,243	5,547	5,856	6,170	6,501	6,850
- 중소기업	31	33	34	36	38	40
- 중견기업	39	41	43	46	48	51
- 대기업	5,174	5,473	5,778	6,088	6,415	6,759
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외)	3,815	4,035	4,260	4,489	4,730	
- 중소기업	22	24	25	26	28	
- 중견기업	28	30	32	33	35	
- 대기업	3,764	3,982	4,204	4,430	4,667	
명목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증감률 전망(t-1)	6.3	5.8	5.6	5.4	5.4	5.4

주: 1. 현행 기본공제 적용기한(2029.12.31.)에 따르면, 2030년(2029년 귀속분)이 마지막 적용 대상

2. 음영은 개정안의 적용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공제액에 해당

3.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증감률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[표 10]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

(단위: 억원, %)

기술분야 및 기업규모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신성장·원천기술	-	-	-	-	12,002.9	-
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외)	-	-	-	-	4,730.2	-
합계	-	-	-	-	16,733.1	-

주: 개정안에는 일반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이 포함되지 않음

□ (향후 철강 분야의 R&D 세액공제 전망치) 2026년 신고기준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,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(2026.3월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개정안에 따라 철강 분야의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지출에 대한 공제가 국가 전략기술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하여,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
- R&D 세액공제 공제율(대기업 기준): (현행) 20% → (개정안) 30%

※ 철강협회 제출자료 기준, 최근 3년('23~'25)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실적은 대기업에서만 발생

[표 11] 철강 분야 기술구분별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		2028	2029	2030	2031
현행 ¹⁾	국가전략기술	21.5	22.7	23.9	25.2
	신성장·원천기술	32.7	34.5	36.4	38.4
	합계 (A)	54.2	57.2	60.3	63.5
개정안	국가전략기술 (B)	70.6	74.5	78.5	82.7
공제액 변화 (B-A) (국가전략기술 철강 분야 추가)		16.4	17.3	18.2	19.2

주: 1) 현행은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만 반영한 기준이며, 해당 효과는 앞서 추계한 결과를 활용

1. 설비투자 증감률은 세액공제 발생과 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전년도 값을 적용

□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효과를 먼저 반영한 후,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는 효과를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세수효과 추정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분(20%)을 반영

[표 12] 적용기한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철강분야 추가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세수효과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	-	-	-	-16,733.1	-16,733.1	-16,733.1
국가전략기술 철강분야 추가	-16.4	-17.3	-18.2	-19.2	-71.1	-17.8
법인세 등	-16.4	-17.3	-18.2	-16,752.3	-16,804.2	-4,201.1
농어촌특별세	3.3	3.5	3.6	3,350.5	3,360.9	840.2
세수효과 (-공제액×[1-0.2])	-13.1	-13.8	-14.6	-13,401.8	-13,443.3	-3,360.8

주: 단조정으로 인해 연도별 금액의 합계와 누적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연도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도 제시된 평균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나.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·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4조 제1항)

□ (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액 전망치) 2025년 잠정실적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구분한 후,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6.3월)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-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의 분야별 비중은 2023~2025년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설비투자의 분야별 비중과 같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는 기업의 개별 R&D 지출 및 시설투자가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며, 2022년 7월 기존 신성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심의까지 담당하도록 확장 개편
 - 연간 4회 개최
- 2023~2025년간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설비투자는 총 101조 8,149억원으로, 이 중 반도체 분야의 비중은 90.4% 수준
 - 해당 기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별로 확정된 설비투자 금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음

[표 13]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현황: 2023~2025년
(단위: 억원, %)

설비투자	반도체	이차전지	디스플레이	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	바이오 의약품	전체
금액	920,015	47,862	44,020	3,851	1,479	1,018,149
(분야별 비중)	(90.4)	(4.7)	(4.3)	(0.4)	(0.1)	(100.0)

주: 확정금액 기준

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~2024년간 기술별 합산 공제실적의 비중을 2025년 잠정실적에 비례적으로 적용하면 국가전략기술의 공제규모는 5,943억원 수준이며, 여기에 다시 동기간 기업규모별 공제실적의 비중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공제액이 대기업에서 발생

- － 기술별 비중(%): 일반 74.7, 신성장·원천기술 0.8, 국가전략기술 24.6
 - 기업규모별 비중(%): (국가전략기술) 중소기업 0.8, 중견기업 0.7, 대기업 98.5

[표 14] 기술별·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정치

(단위: 억원, %)

		2023년	2024년	합산 (비중)	2025 (비중×24,204억원)
기술별	일반	11,470	15,554	27,025 (74.7)	18,075
	신성장원천기술	42	236	279 (0.8)	186
	국가전략기술	8,251	633	8,885 (24.6)	5,943
		2023년	2024년	합산 (비중)	2025 (비중×5,943억원)
국가전략 기술내 기업규모별	중소기업	8	66	75 (0.8)	50
	중견기업	10	50	59 (0.7)	40
	대기업	8,234	517	8,751 (98.5)	5,85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~2025년간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분야별 심의현황을 반영하여, 반도체와 반도체 외 분야를 구분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 - － 기술분야별 비중: 반도체: 90.4%, 반도체 외 9.6%

[표 15] 기업규모 및 기술분야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정치: 국가전략기술

(단위: 억원, %)

기업규모별	2025년 추정치	기술분야별 비중	
		반도체	반도체 외
중소기업	50	45	5
중견기업	40	36	4
대기업	5,853	5,289	564
계	5,943	5,370	573
(비중)	(100)	(90.4)	(9.6)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공제액 전망)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외 분야의 2025년 공제 추정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6.3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○ 현행 기본공제 적용기한(2029.12.31.)에 따르면, 2029년 귀속분(2030년 징수)이 마지막 적용 대상이며, 개정안에 따라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면 2030년 귀속분(2031년 징수)의 공제액이 발생

– 2029년 이후의 설비투자 증감률은 2029년 수준(2.9%)으로 고정하여 전망

[표 16] 국가전략기술의 반도체 외 기술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(국가전략기술)	2027	2028	2029	2030	2031
반도체 외	609.3	627.6	647.0	665.8	685.1
– 중소기업	5.3	5.5	5.6	5.8	6.0
– 중견기업	4.2	4.4	4.5	4.6	4.8
– 대기업	599.7	617.7	636.9	655.3	674.4

주: 1. 현행 기본공제 적용기한(2029.12.31.)에 따르면, 2030년(2029년 귀속분)이 마지막 적용 대상

2. 음영은 개정안의 적용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공제액에 해당

□ (세수효과)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외) 기본공제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31년 발생하는 (2030년 귀속분) 세액공제에 해당함

○ 세수효과 추정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분(20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17] 국가전략기술(반도체 외)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
법인세 등	-	-	-	-681.5
농어촌특별세	-	-	-	136.3
세수효과 (-공제액×[1-0.2])	-	-	-	-545.2

주: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(3) 추계결과

가.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철강 분야 추가

-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는 경우, 법인세 등은 2028년 13.1억원, 2031년 1조 3,401.8억원 등 2028년부터 2031년까지 4년간 총 1조 3,443.3억원(연평균 3,360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8~2031년

(단위: 억원)

세수효과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철강 분야 추가,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0조제1항)	-13.1	-13.8	-14.6	-13,401.8	-13,443.3	-3,360.8
-법인세·소득세	-16.4	-17.3	-18.2	-16,752.3	-16,804.2	-4,201.1
-농어촌특별세	3.3	3.5	3.6	3,350.5	3,360.9	840.2

주: 1.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R&D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2. 단수조정으로 인해 연도별 금액의 합계와 누적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연도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도 제시된 평균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나.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·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-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 등은 1년간 총 545.2억원(연평균 545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세수효과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(반도체 제외) 기본공제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4조제1항)	-	-	-	-545.2	-545.2	-545.2
-법인세·소득세	-	-	-	-681.5	-681.5	-681.5
-농어촌특별세	-	-	-	136.3	136.3	136.3

주: 1.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R&D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2. 단수조정으로 인해 연도별 금액의 합계와 누적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연도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도 제시된 평균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